

#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### KER 827

Date of issue: 2008-03-28

Revision date: 2018-04-13

Version: R0002.0007

#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## 가. 제품명

- KER 827 [MSDS-115]

##### 나. 제품의 경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용도      | : 도료, 접착제, 전기절연 분야, 토목, 건축 분야. |
| - 사용상의 제한 | :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###### ○ 제조자 정보
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회사명     | : 금호피엔비화학주식회사                |
| - 주소      | :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18         |
| - 담당부서    | : 환경안전팀                      |
| - 전화번호    | : 061-688-3682, 061-688-3684 |
| - 긴급 전화번호 | : 061-688-3507               |
| - FAX 번호  | : 061-688-3686               |

###### 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회사명     | : 금호피엔비화학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    |
| - 주소      | : 서울 특별시 종구 청계천로 100, 시그니처타워 동관 8층 |
| - 담당부서    | : 영업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전화번호    | : 02-6961-3464, 3481               |
| - 긴급 전화번호 | : 02-6961-1114                     |
| - FAX 번호  | : 02-6961-3492                     |
| - 이메일 주소  | : epoxy Domestic@kpb.co.kr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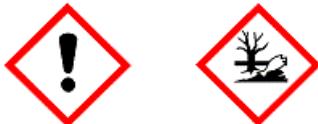
##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2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2
- 피부 과민성 : 구분1
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2

##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###### ○ 그림문자



###### ○ 신호어

- 경고

###### 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-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

###### ○ 예방조치문구

**1) 예방**

- P261 (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
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시오.

**2) 대응**
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21 응급처치(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로 이동, 먹었을 때 구토를 유발할지에 대하여 의료진의 조언을 구함)를 하시오.
- P332+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P333+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나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P362+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.
-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.

**3) 저장**

- 해당없음

**4) 폐기**

- P501 폐기물관리법의 해당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.

**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****○ NFPA 등급 (0 ~ 4 단계)**

- 보건 : 2, 화재 : 1, 반응성 : 0

**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**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	다이페닐올 프로페인 다이실사이딜 에터 ;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에터 ; 다이메틸메테인 다이글리시딜에터 ; 2,2-비스(4-(2,3-에폭시프로포시)페닐)프로페인 ; 2,2'-(1-메틸에틸리덴)비스(4,1-페닐렌옥시메틸렌)비스(4,4'-비스(2,3-에폭시프로포시)다이페닐다이메틸메테인 ; 비스(4-하이드록시페닐)다이메틸메테인 다이글리시딜에터 ; 옥시레이인, 2,2'-(1-메틸에틸리덴)비스(4,1-페닐렌옥시메틸렌)]비스- ; 2,2'-(1-메틸에틸리덴)비스(4,1-페닐렌옥시메틸렌)]비스옥시레이인 ;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에터	1675-54-3 / KE-03162	100

**4. 응급조치 요령****가. 눈에 들어갔을 때**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**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**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
#### 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
#### 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
####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#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####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,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전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.

####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- 비인화성,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/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

####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.
-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진화 방법을 찾아 사용하시오.
- 필요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.
-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.

#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#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(『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』 항 참조)를 착용하여,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.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.
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.

#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
#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소량 누출 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용매를 닦아내시오.
-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.
- 폐수가 수로, 하수구, 지하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시오.

#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-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시오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의, 작업화를 사용한다.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
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-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시오.
- 화기엄금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.
-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.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#### ○ 국내노출기준

- 자료없음

#### ○ ACGIH노출기준

- 자료없음

#### ○ 생물학적 노출기준

- 해당없음

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## 다. 개인 보호구

#### ○ 호흡기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.
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 화합물용)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)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
#### ○ 눈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
#### ○ 손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
#### ○ 신체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
- 성상	액체(점성이 있는 액체)
- 색	맑고 아주 짙은 노랑
나. 냄새	아주 짙은 냄새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자료없음
마. 녹는점/어는점	상온에서 액체이므로 적용안됨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> 260°C
사. 인화점	259 °C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자료없음
카. 증기압	0.01Pa (at 20 °C)
타. 용해도	자료없음
파. 증기밀도	해당없음
하. 비중	1.16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자료없음
너. 자연발화온도	자료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러. 점도	8~10.5 (at 25 °C)
며. 분자량	자료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###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유해증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

### 나. 피해야 할 조건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
### 다. 피해야 할 물질

- 자료없음

###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자료없음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### 가. 가능성 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
  - 자료없음
- (경구)
  - 자료없음
- (눈·피부)
  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  -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  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###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#### ◦ 급성 독성

##### \* 경구 독성

- 제품 (ATEmix) : 자료없음
- [4,4'-(1-methylethyl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LD50 > 1000 mg/kg Rat (NLM)

##### \* 경피 독성

- 제품 (ATEmix) : >5000mg/kg
- [4,4'-(1-methylethyl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LD50 > 20000 mg/kg Rabbit (NLM)

##### \* 흡입 독성

- 자료없음

#### ◦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[4,4'-(1-methylethyl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- 토끼 피부 자극성을 가짐(CERI Hazard 자료 2002) - 유럽연합 지침 7차 개정 부속서 1의 분류는 R38(피부에 자극성을 일으킴) - 토끼의 STANDARD DRAIZE TEST에서 중간이상의 자극을 보임 (NITE; ECB-ESIS; THOMSON)

#### ◦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
- [4,4'-(1-methylethyl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- 토끼 눈 자극성을 가짐(CERI Hazard 자료 2002) - 토끼의 STANDARD DRAIZE TEST에서 중간이상의 자극을 보임 (NITE; THOMSON)

#### ◦ 호흡기 과민성

- 자료없음

#### ◦ 피부 과민성

- 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- 유럽연합 지침 7차 개정 부속서 1의 분류는 R43(피부 접촉에 의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) (ECB-ESIS)
  - **별암성**
  - \* **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IARC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OSHA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ACGIH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NTP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EU CLP**
    - 자료없음
- **생식세포 변이원성**
  - 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- In vitro CHL cells, 대사활성화 없는 염색체이상시험에서 양성 이었으며, 대사활성화 있는 시험에서는 음성. - *Salmonella typhimurium*시험에서 양성 (NLM/CCRIS; NLM/GENETOX)
- **생식독성**
  - 자료없음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**
  - 자료없음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  - 자료없음
- **흡인 유해성**
  - 자료없음
- **고용노동부고시**
  - \* **별암성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생식세포 변이원성**
    - 자료없음
  - \* **생식독성**
    - 자료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### 가. 생태독성

- **어류**
  - 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LC50 1.41 mg/l 96 hr *Oryzias latipes* (NITE)
- **갑각류**
  - 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EC50 1.7 mg/l 48 hr (NITE)
- **조류**
  - 자료없음

###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**잔류성**
  - 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log Kow = 2.821 (Estimate)
- **분해성**
  - 자료없음

### 다. 생물 농축성

- **생물 농축성**
  - 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BCF 0.56 ~ 0.67 (Exposure concentrations:10ug/l, 5.6<=BCF=<6.8(Exposure concentrations:1ug/l)) (NITE)
- **생분해성**
  - [4,4'-(1-methylethyli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0 (%) 28 day (NITE)

### 라. 토양 이동성

- 자료없음

**마. 오존층 유해성**

- 해당없음

**바. 기타 유해 영향**

- 자료없음

**13. 폐기 시 주의사항****가. 폐기방법**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- 소각하시오.
- 증발·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
- 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.
- 중화·산화·환원·중합·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시오.
- 잔재물은 소각하거나, 응집·침전·여과·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.

**나. 폐기시 주의사항**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**가. 유엔번호(IMDG CODE/IATA DGR)**

- 3082

**나. 유엔 적정 선적명**

-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, LIQUID, N.O.S.

**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- 9

**라. 용기등급(IMDG CODE/IATA DGR)**

- III

**마. 해양오염물질**

- 해당됨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**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A (General fire schedule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F (Water-soluble marine pollutants)

**15. 법적 규제현황**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- 작업환경측정물질
  - 해당없음
- 노출기준설정물질
  - 해당없음
- 관리대상유해물질
  - 해당없음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  - 해당없음
- 제조등급지물질

- 해당없음
- 허가대상물질
  - 해당없음
- PSM대상물질- 제품: 해당없음
  - 해당없음

#### 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
  - 해당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4,4'-(1-methylethyl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)
- 사고대비물질
  - 해당없음
- 제한물질
  - 해당없음
- 허가물질
  - 해당없음
- 금지물질
  - 해당없음

####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
####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할로겐족 외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)에 해당됨.

####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  -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 - \* 확정분류 결과
    - [4,4'-(1-methylethyldene)bisphenol polymer with (chloromethyl)oxirane] : H319, H315, H317, H411
- 미국 관리 정보
  - \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   - 해당없음
  - \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   - 해당없음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  - 해당없음

#### 16. 그 밖의 참고사항

##### 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9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ESIS, NLM, SIDS, IPCS, NCIS, ECHA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##### 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08-03-28

**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**

- 5회, 2018-04-13

**라. 기타**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